

대한전기협회 · 고려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서

대한전기협회(이하 '산업체'라 한다)과 고려사이버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대상과 입학절차)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산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.
② 위탁교육대상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③ 대학은 입학전형절차를 거쳐 위탁교육 대상자 중 위탁생을 선발한다.
④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.

제3조(입학생의 혜택) ① 위탁생은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하며, 입학금 면제 및 50%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.
②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본교 대학원에 입학할 시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생의 신분) 본 협약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교육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5조(교육생의 재직확인) ① 산업체 소속 등록생은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재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등록생이 산업체를 퇴사한 경우 대학의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다.
③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, 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된다. (단, 이직, 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학적이 유지된다.)

제6조(위탁교육위원회) 본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'위탁교육위원회'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구성 시 그 조직과 구성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시행일 및 협력기간) 본 협약서는 2017년 1학기 개강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발휘하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조정) 본 협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과 산업체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9조(협약서의 보관) 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한 후 양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2월 8일

대한전기협회
회장 조 환



고려사이버대학교
총장 김 중 순

